

서지유틸리티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보호와 이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pyright Protection & Utilization of Bibliographic Utility Database

홍재현(Jae Hyeun Hong)*

□ 목 차 □

서론

1. 데이터베이스의 특성 및 보호의 필요성
2.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국제적 동향
3.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상의 관련원칙
4. 서지유틸리티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유통·이용에 관련된 저작권법상의 제문제
 - 4.1 저작물성
 - 4.1.1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서지정보의 저작물성
 - 4.1.2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저작물성
 - 4.2 저작자
 - 4.3 저작재산권
 - 4.3.1 목록레코드의 저작권 보유의 변화
 - 4.3.2 입력레코드에 대한 저작권 보유

- 4.3.3 공동저작자에 의한 입력레코드의 보유
 - 4.3.4 다운로드와 복제 및 배포
 - 4.4 저작재산권의 제한
 - 4.4.1 다운로드와 공정사용
 - 4.4.2 다운로드에 대한 기본지침의 설정
 - 4.4.3 보호기간
 - 4.5 기타 관련문제
 - 4.5.1 개변
 - 4.5.2 공표시기
 5. 서지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이용
 - 5.1 도서관 서비스의 법적 보호
 - 5.2 보호의 내용
 6. 서지데이터베이스의 다운로드에 대한 관행 및 법적문제에 관한 의견조사 및 분석
- 결론

초 록

서지데이터베이스는 창작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자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의 문제를, 후자에 대하여는 특별입법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검토한다. 그리하여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기관의 협동에 의하여 제작되는 각종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위한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서지유틸리티 데이터베이스 이외에 도서관 등에서 제작된 서지데이터베이스가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의 결여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위한 법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re are two types of bibliographic database, the one is bibliographic database with creativity, the other is bibliographic database without creativ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of bibliographic database with creativity by giving consideration of copyright law and the problems of bibliographic database without creativity by *sui generis* system. Thus this paper provided the methods that resolv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copyright law in order to protect all types of database being produced by way of the cooperation between the libraries and the information service centers. Secondly, this paper provided the legal devices to protect bibliographic database produced by the libraries which cannot be protected due to the lack of the creativity in the selection or arrangement of the material.

* 상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논문접수일: 1993년 11월 23일

서론

연구의 필요성

종래 재산이라고 하면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나 가재도구와 같은 동산을 의미하였으나, 근래에 와서는 인간의 사고활동에 의한 지적창작물도 재산으로 인정하여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의 지적소유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컴퓨터가 널리 이용됨에 따라 생겨난 데이터베이스까지 지적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고, 이들에 대한 법적보호가 국내외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데이터베이스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의 법적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본 논문이 다루는 서지유틸리티 (bibliographic utility) 데이터베이스는 일반데이터베이스와는 달리 서지유틸리티를 매개로 하여 참여도서관들의 서지레코드가 입력되고, 수시로 서지정보가 협력네트워크에 의해 공유되는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입력레코드에 대한 권리주장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이 정보들은 일반이용자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기가 쉬우며, 동시에 그러한 권리침해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또한 수록데이터를 간단히 조작하여 새로운 저작물이나 2차적저작물을 제작하여 유통시킬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서지유틸리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법적 보호의 방안을 저작권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에서는 아직 서지유틸리티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발달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필연적으로 협동정신에 입각한 다수의 각종 도서관 또는 서지정보기관의 참여에 의하여 서지데이터베이스가 공동으로 제작되고 그 정보가 공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대규모 서지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서지정보를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의 목적

서지데이터베이스는 크게 그것이 창작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둘로 나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 논문은 이 두가지 경우를 염두에 두어 전자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의 문제를, 후자에 대하여는 특별입법 규정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검토한다.

첫째, 서지유틸리티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유통·이용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현행 저작권법의 적용과 대비하여 연구 분석한다.

- (1)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개별목록정보의 저작물성과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가지는 저작물성의 문제
- (2) 데이터베이스의 저작자문제
- (3)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로 보호할 경우, 입력레코드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저작권 보유의 문제
- (4) 데이터베이스의 다운로드와 복제 배포 및 공정사용(fair use)의 문제
- (5) 개변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의 2차적저작물성의 인정 및 공표시기 등의 관련문제

그러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도서관 및 정보 서비스기관들의 협동에 의하여 제작되는 각종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위한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는 서지유틸리티 데이터베이스 이외에 도서관 등에서 제작된 서지데이터베이스가 창작성의 결여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의 다른 보호책 및 정보이용에 관한 문제의 논의를 통하여, 이를 위한 법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일반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의 법적 보호와 서지유틸리티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보호문제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선진 각국의 관련 법조문과 문헌을 조사 분석하고,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련된 학자 및 실무담당전문가와와의 면담을 통해 자문을 구하였다. 나아가 국내 데이터베이스 서지정보의 다운로드에 대한 실태와 더불어 다운로드의 법적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하기 위하여 사전조사에 이어 설문지를 통해 얻은 조사자료를 분석하였다.

1. 데이터베이스의 특성 및 보호의 필요성

1.1 데이터베이스의 특성

데이터베이스는 “논문·수치·도형 기타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는 다량정보의 전달가능성, 선택성, 접근편의성, 재생산가능성, 공유가능

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1.2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필요성

1.2.1 서비스산업적 측면

데이터베이스를 제작·보급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 및 시간이 투입된다.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와 재산적인 권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및 제작활동은 침체될 것이며 따라서 서비스산업도 위축될 것임에 틀림없다.

1.2.2 문헌정보학적 측면

서지유틸리티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누가 저작자가 되며 입력레코드에 대한 권리행사를 누가 할 수 있는지 등과 관련한 다툼을 사전에 대비하고 법적 분쟁을 원만히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유통과 이용과정에서 인쇄형태의 저작물에 비하여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사용되기 쉬우므로 이의 권리침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다운로드된 전자적 정보이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와 관련한 저작권 보호와 함께, 전자적 정보의 공정하고 원활한 이용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서지유틸리티 데이터베이스 이외의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서지정보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그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1.2.3 법적 측면

데이터베이스는 정보이용자에게 여러 편리함을 제공하므로,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개발할 것이 요구된다.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해서

는 투입된 지적 노력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

2.1 UNESCO와 WIPO

국제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문제는 UNESCO와 세계지적소유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1987년 12월 WIPO와 UNESCO가 합동으로 설치한 「인쇄문자에 관한 정부전문가위원회」에 의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자가 갖는 권리와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보호문제에 관련된 12개의 원칙이 설정되었다. WIPO는 1988년 10월에 「모델저작권법 초안」을 작성하여 각국에 배포하였는데, 이 모델법 초안 중에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2.2 GATT의 우루과이 라운드

GATT의 우루과이 라운드 지적소유권의 무역관련측면(TRIPs)협상에서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첨예한 견해 차이로 인하여 아직 그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UR 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도 이러한 영향력을 받아 도서관이나 정보서비스기관의 온라인 정보서비스에 커다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3 선진각국의 입법례

2.3.1 미국

미국의 경우 1976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해 편집저작물(compilation)로서 보호하고 있다.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1975년에 미국 연방의회가 「저작물의 새로운 기술적 이용에 관한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New Technological Uses of Copyrighted Works : CONTU)」를 설립하였다. 이 위원회는 미국 저작권법을 광범위하게 개정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의 일환으로, 기계적 표현에 의한 정보의 축적·처리·검색이 가능한 자동시스템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였다. 1978년 7월 31일에 그 최종권고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권고안은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로 해석하는 종래의 입장을 크게 탈피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컴퓨터 프로그램과는 달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규정은 1980년에 개정된 저작권법내에 마련되지 못하였다.

그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대한 문제들은 1976년 저작권법 이후에도 계속 대두되자, 1984년경 미국 연방상하원의 사법위원회(Judiciary Committees)는 미의회의 기술평가청(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 OTA)에 연구를 의뢰하였다. 이 연구 결과 1986년에 발표된 「전자정보시대의 지적소유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n Age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이라는 보고서에서는 저작물을 기본적으로 문예저작물(works of art), 사실저작물(works of fact), 기능저작물(works of function)의 3가지 범주의 표현물로 구분하여 그 보호의 유형과 범위를 논의하였다. 다음의 <그림 1>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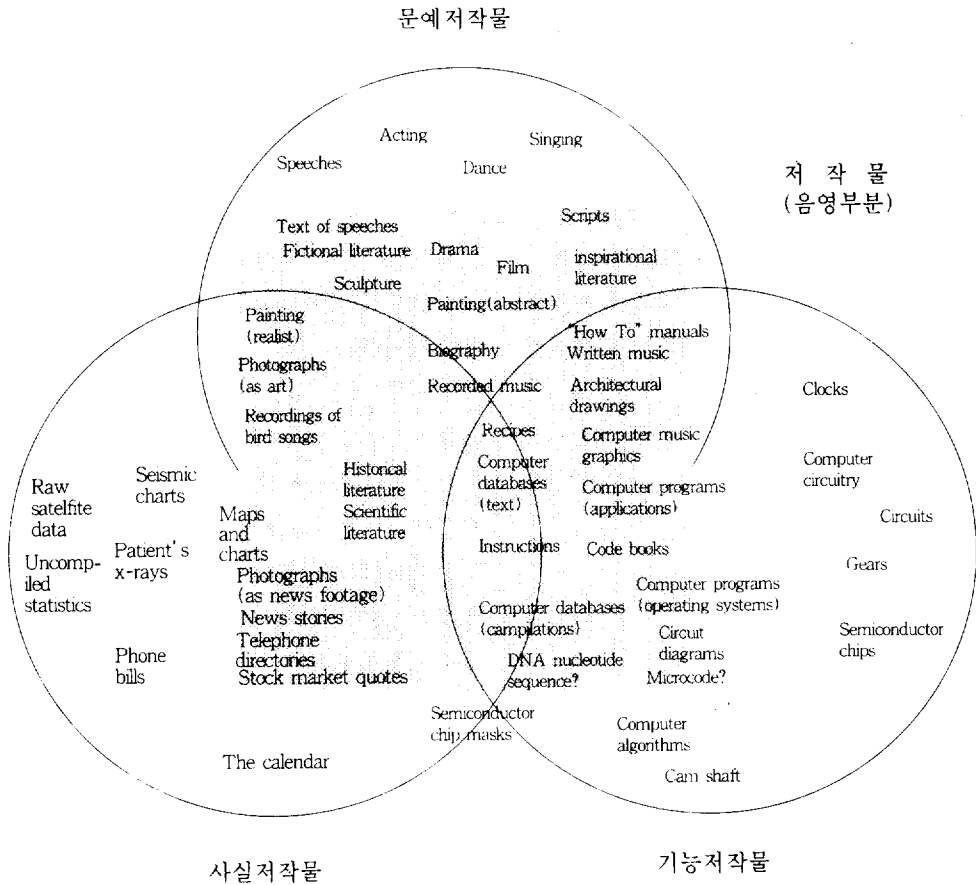
1987년 4월 미국의회도서관 네트워크문위원회

(Network Advisory Committee of the Library of Congress)가 개설되어 OTA 보고서에 관하여 토론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의 적용은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로 인하여 많은 어려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최근 연방대법원의 Feist 판결 (1991년)에서 소재의 선택, 정리, 배열에 있어서 독창성이 있는 데

이타베이스의 경우에만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하였다.

2.3.2 일본

일본은 1986년에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세계에서 유일하게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독립된



출전: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 an Age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Washington: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Office of Technology Assesment (Report), p. 67.

<그림 1> 정보유형에 의한 저작물의 구분

데이터베이스저작물로 보호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저작물 (제12조의 2)은 “데이터베이스로서 그 정보의 선택 또는 체계적인 구성에 의하여 창작성을 갖는 저작물로서 보호되며(제12조의 2의 1), 전항의 규정은 동항의 데이터베이스의 부분을 구성하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의 2의 2)고 규정되어 있다.

2. 3. 3 EC의 Green Paper 및 지침안

EC(European Community)는 일본에서의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조문을 참고하여 데이터베이스 보호 등 저작권 전체를 다룬 「저작권과 기술의 도전에 관한 그린페이퍼 (Green Paper of Copyright and the Challenge of Technology - Copyright Issues Requiring Immediate Action)」를 1988년에 발표하였다. 1992년에 발표된 데이터베이스지침안은 데이터베이스의 일반적 보호규정뿐만 아니라 창작성의 결여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적 권리 (*sui generis right*)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2. 4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대한 명시적인 법규정이 없으나, 이를 저작권법의 편집저작물로 해석하여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인 1993년 6월의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논문·수치·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3.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상의 관련원칙

제2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편집저작물로 해석되어 보호되고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은 독립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한국 저작권법, 제6조 제2항)고 규정되어 있다.

3. 1 보호의 대상

3. 1. 1 표현

저작권은 다른 지적소유권과는 달리 저작물의 사상을 표현 (expression of idea) 한 형식 또는 표현의 방법만을 보호한다. 그리고 저작물에 담긴 사상자체 (idea itself)는 보호하지 않는데, 이는 일정한 경우에 특허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유형의 매체에 표현되지 않은 학설, 원칙 및 방법론 자체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데이터베이스는 문자, 수자 또는 문자나 수자적 기호로 표현된 저작물로서, 직접 또는 기계나 장치의 도움으로 지각, 복제 또는 전달될 수 있는 저작물이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는 표현매체에 일정한 형태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속한다.

3. 1. 2 독창성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유형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유형적으로 표현된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그 저작물이 독창성 (originality)이나 창작성 (creativity)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저작물성의 인정이 가늠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국가의 저작권 법상이 용어에 대한 정의는 아직 미정인 채로 남아 있다.

저작물의 독창성이란 타인의 저작물에 의거하지 않고 저작자의 독자적 사색에 의한 창작적인 표현을 뜻하며, 저작물의 표현형식에서 독창성이 발현하고 있으면 족한 것으로 사상·감정에 있어서까지 창작적인 것이 필요하지는 않다. 또한 저작권법에서 사용되는 독창성의 개념은 기존 저작물의 표절이나 고도의 모방이 아닌 이상 저작물이라 하기에 지장이 없으며, 노력의 독립성 (independence of effort)에 있어서의 독창성을 말한다.

그러면 편집저작물로서 데이터베이스의 독창성을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1991년 3월 27일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 Inc. 판결에서 편집저작물의 독창성 인정여부에 관한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Feist사가 Rural사의 편집물의 일종인 전화번호부의 화이트페이지 (white pages)의 저작권 침해여부를 둘러싼 소송사건으로서, Feist사가 그들 자신의 광범위한 전화번호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Rural사에게 그 정보를 팔 것을 제의하였으나 Rural사가 이를 거절하자 Rural사의 허락없이 그 정보를 가져다 그대로 사용한데서 발단되었다.

종래 법원에서는 편집저작물의 경우 편집저작물을 작성하는데 투입된 '이마의 땀 이론 (sweat of brow doctrine)'이 대체로 신봉되어 저작권 보호가 인정되어 왔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Feist사

가 Rural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Kansas에 있는 연방지방법원 (Federal District Court)은 '이마의 땀 이론'에 입각해서 "전화번호부는 저작물성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을 옹호하는 일련의 판례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Feist사는 이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하였다. 그리하여 제2심인 제 10 고등법원에서도 전화번호부는 저작물성이 있으므로 Feist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연방지방법원에서의 판결을 대체적으로 긍정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최종적으로 Rural사의 화이트페이지는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독창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Feist사의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하급판결문을 파기하였다. 왜냐하면 Rural사의 화이트페이지에 수록된 정보는 전화가입자명과 전화번호, 주소를 성명의 알파벳순으로 단순히 배열하기만 하였으므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동 판결은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 인정에 있어서 종래의 '이마의 땀 이론'을 거부함으로써, 전화번호부와 기타 사실의 편집저작물은 사실정보를 수집하는데 많은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었을지라도, 그에 의해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사실의 선택, 정리, 배열 (selection, coordination, arrangement, SCA)에서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동 판결에 바로 뒤이어 하급심에서 직업별로 분류한 전화번호부의 옐로우페이지 (yellow pages)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BellSouth Advertising & Publishing Corp. v. American Business Lists (1992. 9. 8.)사건의 재판에서 내려진 바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한 저작권법상의 독창성은 매우 낮은 정도로 충분하다. 그리하여 저작자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창작되고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전술한 바와 같이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로서 해석되어, 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서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만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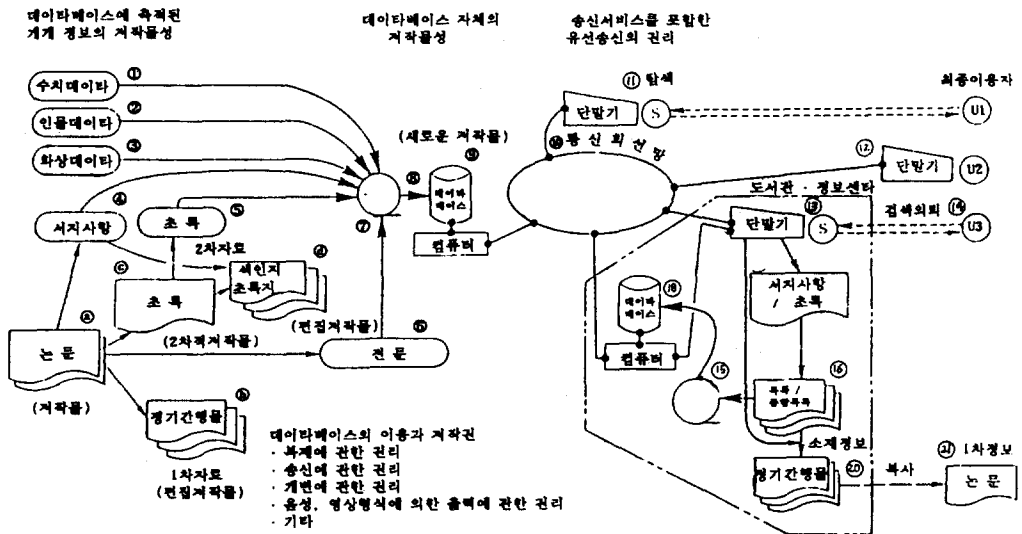
3.2 저작권

저작권이란 시, 소설, 희곡, 학술적 저작 등의 어문저작물, 음악, 연극, 건축, 사진, 영화,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 (저작권법 제

4조 1항 참조)에 대하여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은 판권을 보호하는 데에서 출발하였으나,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새로운 저작물의 전달매체가 등장함에 따라 저작권법은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화되어 왔다. 그리하여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책과 잡지에서 오늘날 연극, 영화, 음반, 사진, 도형, 시청각자료,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 이르는 폭넓은 범위의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수용하게 되었다.

저작권법의 내용은 각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저작자의 창조적인 노고에서 나온 지적생산물에 대하여 공정한 보상을 보장해 줌으로써 저작자의 창작성을 진작시키며, 궁극적으로는 문화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출전:井出翁, 著作権法をめぐる動き:著作権審議會の審議のなから現代の圖書館, 25(1) (1987), p. 18.

<그림 2> 데이터베이스와 저작권

이와 같이 저작권은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잠재적인 창작자의 창작을 촉진시키는 것이 기본목적인 것이다. 따라서 잠재적인 창작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이상적이 되겠지만, 실제로 잠재적인 창작자는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보호가 불가능하다. 이에 기존의 창작물을 창작한 사람의 지적 노력을 보상해 줌으로써 앞으로 있을 잠재적인 창작자에게 활력을 주자는 것이 저작권법의 기본정신인 것이다.

다음의 < 그림 2 >는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을 나타낸 것이다.

3.2.1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 중 우리나라에서의 데이터베이스 저작자는 복제권 (제16조), 방송권 (제18조), 배포권 (제20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21조) 등의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따라서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거나, 방송할 경우 또는 데이터베이스나 복제물을 배포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타인이 제작한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한 경우, 이는 저작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간주된다. 그래서 저작권자는 무단으로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복제 또는 사용한 타인을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변경에 의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저작권이 미치게 되므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저작재산권도 일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양도나 상속 등의 대상이 된다. 저작권의 전부를 양도할 수 있음은 물론, 저

작권의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다. 한편 원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면서도 원데이터베이스와 구별되는 독창적인 표현으로 작성된 초록은 2차적저작물로서 간주되어 별개의 저작물로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 데이터베이스가 2차적저작물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는 원데이터베이스와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작성된 2차적저작물의 내용적 관계의 정도, 독창성의 유무 등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다고 본다.

3.2.2 저작인격권

특허법에서는 인격권의 보호가 없다. 인격권은 지적소유권법 중 저작권법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의 하나이다.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지적재산권과 더불어 저작인격권 (moral right)을 가진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하여 그 저작자로서의 자격에 의해 가지는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한다.

한국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으로 공표권 (제11조), 성명표시권 (제12조), 동일성유지권 (제13조)을 가진다. 따라서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저작자는 자신의 미공표된 데이터베이스를 공연·방송·전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표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공표할 때에 성명 (기관명)을 표시할 것인가 말 것인가, 표시할 경우 분명 (실명)으로 할 것인가 필명 등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이 성명표시권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갖게 된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 나 제목을 다른 사람이 저작자의 뜻을 거역해서 개변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도 가진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는 법인저작에 해당하는 것이

많으므로, 이 경우에는 법인 등이 저작인격권을 가지게 된다.

3.3 저작권의 제한 - 이용자의 권리 보호

저작권은 저작자의 재산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정보는 공공재 (public goods)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본질적으로 저작물의 정보는 자유롭게 유통되어야 한다. 만약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작자의 독점적인 권리를 영구히 미치게 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어떠한 경우이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일반공중이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불편해지고 오히려 문화의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이에 저작자의 재산상의 독점권을 일정한 조건 내에서 어느 정도 제한하여 정보의 원활한 이용 및 정보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저작권의 제한과 그 제한의 하나인 공정사용의 의의이다.

3.3.1 저작재산권의 제한

한국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12개의 조항 중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정보의 원활한 정보이용의 도모와 밀접하게 관련된 조항은 학교교육 목적 등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제23조),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제25조), 사적사용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제27조), 도서관 등에서 복제하는 경우 (제28조)의 4개 조항이고, 그 중에서도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3가지 경우는 특히 서지유틸리티 데이터베이스의 다운로드와 관련하여 그 적용가능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한편 데이터베이스가 원저작물의 극히 일부분을 다루고 있어 인용의 범주에 지나지 않는다면, 상기의 규정에 따라 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데이터베이스의 수록정보가 인용의 한계를 넘지 않을 경우는 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록내용이 전문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싣고 있어서 원데이터베이스의 판매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면, 이는 원저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3.3.2 법정허락

법정허락 (legal license)이나 강제허락 (compulsory license)이란 공익적인 견지에서 정부기관 등의 허락을 받아 정해진 사용료를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저작자의 독점권을 견제하고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자의 거소가 불명하여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제47조), 저작물의 방송이 공익상 필요한데 저작재산권자와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제48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번역하고 그 번역물을 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9조), 판매용 음반이 처음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후에 다음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제50조) 법정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데이터베이스 저작자를 알 수 없거나 공익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법정허락에 의거하여 법률

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권한있는 기관이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3.3.3 보호기간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 또는 단체는 그 정신적 노고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저작권을 보유한다. 그러나 저작권은 일반재산권과는 달리 일정한 기간 밖에 보호되지 않아서, 이 기간을 지나게 되면 누구라도 마음대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간 만료 후에는 인류의 공유재산으로서 자유로운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저작권은 우리나라, 미국, 일본 모두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창작된 날로부터 시작해서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가 사망한 후 50년 동안 존속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데이터베이스도 이에 적용된다.

공동저작물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은 우리나라, 미국, 일본 모두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후 50년 동안 존속하며, 단체명의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공표한 때부터 50년 동안 존속한다.

3.3.4 공정사용의 허용

공정사용은 미국에서는 fair use를, 영국에서는 fair dealing을 의미한다. 공정사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조건에 한하여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저작물의 공정한 사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공정사용은 저작권과 관련된 재판과정에서 생겨나 입법화된 것이지만, 현재 저작물의 공정한

사용은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저작권의 양축을 이루고 있다. 저작권법상 공정사용의 규정을 확실하게 조문화하고 있는 예로는 영국과 미국의 저작권법을 들 수 있다.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공정사용이란 “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육, 연구 또는 조사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복제물 또는 음반 등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저작물의 공정사용을 결정하는 4개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미국 저작권법, 제107조)

- (1) 저작물의 사용이 상업적 성격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인 교육목적인지의 여부를 포함한, 저작물의 사용의 목적 및 성질
- (2)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성질
- (3)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전체에 대한 사용된 부분의 양과 상당성 (substantiality)
- (4) 그 사용이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저작물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

한편 우리나라와 일본의 저작권법에서는 공정사용이나 공정이용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저작권법의 목적에서는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 (한국 저작권법 제1조)”, “공정한 이용에 유의함 (일본 저작권법 제1조)”을 목적으로 한다고 뚜렷하게 밝히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와 일본 저작권법은 대륙법계의 국가와 같이 모두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저작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특정사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의 각조항은 “공정사용의 관념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적당한 범위 (제24조), 공정한 관행 (제25조) 등의 조문으로부터 저작물 이용을 둘러싸

고 상반된 이해관계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과정에서 공정사용의 법리는 저작권제한의 일반원칙으로서 구체적인 사건을 해결하는 가운데 간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비록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이 공정사용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도 저작권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권리의 균형을 이루고, 이용자의 정당한 정보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미국 저작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 공정사용을 결정하는 4가지 요건을 고려하여 그 사용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4. 서지유틸리티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유통·이용에 관련된 저작권법상의 제문제

서지유틸리티(bibliographic utility)란 서지데이터의 공동작성과 공동이용을 전제로, 회원도서관이 작성한 개개의 목록레코드를 제공받아 협력네트웍을 통하여 전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를 제공하고 대규모 서지화일들을 관리 유지하는 서지정보봉사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서지유틸리티에 참가하는 회원도서관들은 서지유틸리티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원격중앙컴퓨터(remote central computer)에 연결된 컴퓨터 터미널 상에서 그들의 편목을 완성하고 있다.

서지유틸리티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은 각 도서관에 새로 들어온 책에 대한 목록저록(catalog entry)을 한 도서관에서 작성하지만 하면, 다른 회원도서관들의 편목자들은 최초로 작성한 도서관의 저록을 공유(sharing)할 수 있게 하는 점과, 수백 개 또는 수천 개의 회원도서관들의 소장자료를 포함하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수록한 온라인 서지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4.1 저작물성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미국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보호받는 저작물로 예시되어 있지 않다.

서지유틸리티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논의하는데 있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서지정보가 가지는 저작물성과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갖는 저작물성이라는 2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4.1.1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서지정보의 저작물성

서지유틸리티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개별목록레코드는 기계가독형 디스크에 유형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저작물에 요구되는 독창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 요구되므로, 막연하게나마 개별목록레코드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기준을 쉽게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목록레코드가 독창성의 조건을 충족시키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편목자가 수행하는 편목과정을 전적으로 기계적인 작업으로 특징짓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목록규칙인 영미목록규칙 제2판의 목적은 통일성을 기하는데 있지만, 편목과정은 편목자가 그들의 전문적인 기술을 통해서 관련된 편목규칙을 해석하고, 특정 출판물에 그것을 적절히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록 그 결과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 될 수 있겠지만, 각 상황에 따른 규칙의 적용으로 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기술부에 포함될 적절한 엔트리들을 선택하는 데에도 편

목자의 지적판단이 요구된다.

더구나 주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제공하기 위하여 분류번호를 결정하고 주제분석을 거쳐 주제명을 배정하는 것은 비록 일정한 분류표와 주제명표목표에 의거한다 할지라도, 그 선정은 단순한 기계적인 결정이 아니라 편목자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또한 표목을 선정하는 작업도 편목자의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

뿐만 아니라 편목작성은 실제로 누구나 아무렇게나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는 편목작업이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도서관학의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전문직 사서에 의하여 수행되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과의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서에 의하여 수행된다.

이와 같이 개별목록레코드는 일정한 형태로 표현되어 있으며, 개별목록레코드의 작성은 편목자가 전문교육과 경험을 통하여 획득한 전문적 기술 및 지적 판단을 통하여 작성된다. 따라서 개별목록레코드는 원저작자의 저작물로서 충분히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서지레코드에 수록된 개개의 서지데이터도 저작권이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시될 수 있다. 서지레코드를 구성하는 개개의 서지데이터 자체는 독창적 창작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작성에는 지적 노력이 거의 수반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지레코드에 들어 있는 각 서지데이터 자체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적인 통례이다.

또 하나의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거의 같은 시기에 동일한 출판물을 동일한 편목규칙을 적용하여 서지레코드를 작성한 경우 최초로 편목한 도서관만이 그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겠는

가 하는 점이다. 저작권은 동일한 창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특허권과는 달리, 동일한 저작물이 복제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창작되는 한, 각각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동일한 출판물을 동일한 편목규칙에 따라 각각 편목한 경우, 최초의 서지레코드는 당연히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며, 다른 편목자가 독자적으로 동일한 일련의 편목규칙을 적용하여 동일한 저작물을 편목한 경우 이는 명백히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으므로 각각의 서지레코드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이러한 경우 출판물을 편목한 최초의 도서관에 독점권을 부여하게 된다면, 차후의 편목자의 편목작업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개별서지레코드의 저작권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강조함으로써 독점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로서 특징지을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정보의 어디에까지 저작권이 미치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은 그 안에 수록되어 있는 개개의 저작물과는 관계없이, 그 전체에 대해서 독립된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가 편집저작물로서 저작물성을 인정받게 될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근거데이터(underlying data)인 개별목록레코드가 독자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커다란 문제이다.

더구나 개별목록레코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명백히 저작물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 데이터베이스가 그 안에 수록된 정보의 저작물과는 관계없이, 조잡된 정보전체로서만 독립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모순이라 아니할 수 없다.

4.1.2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저작물성

우리나라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편집저작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데이터베이스가 기계가독형태로 생성되어 일반 편집저작물 보다 다소 복잡한 과정이 추가될 뿐, 편집물의 작성에 있어서의 소재의 선택과 배열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백과사전과 같은 편집물과 차이가 없으며, 이를 편집저작물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지유틸리티 데이터베이스는 단순한 서지정보의 집합체가 아니라 컴퓨터를 통해 검색할 수 있으며 온라인방식에 의해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정보의 집합물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편집저작물과는 달리 데이터베이스 제작에는 컴퓨터를 통하여 검색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정보를 분석·가공하며, 키워드를 선정·부여하며, 화일을 작성하는 등에 창작적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지적 활동이 수반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정보를 배열하는 것은 독자에게 호소하는 효과가 더욱 높은 순서로 배열하는 등 종래 말해지고 있는 배열과는 다른 점에 특색이 있으며, 또 망라성이 높은 쪽이 데이터베이스의 이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소재의 선택이라는 점에서도 종래의 편집저작물과는 다른 면도 가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상 전통적인 편집저작물의 요건인 정보의 선택 또는 배열의 관점에서만 단순히 데이터베이스의 창작성을 인정하는 것은 반드시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는 저작권법이 전통적인 편집저작물과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특성과 그 작성과정에 있어서의 독창성을 충분히 수

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표현방법이 아니라 그 안에 수록된 정보 자체이다. 그러나 정작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것은 사실을 표현한 방법만을 보호받을 뿐이지, 사실 자체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4.2 저작자

저작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사람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제2조 제2항). 또한 미국에 있어서 연방대법원은 저작자를 “최초로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독창자 또는 제작자”로 정의한 바 있다. 저작자의 인정은 저작물의 내용이나 수준과는 별개이므로, 직업적인 문인이나 학자가 아니더라도 창작의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저작 행위만 있으면 누구든지 저작자가 된다.

데이터베이스를 편집된 저작물로 본다면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한 자가 편집자가 되고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서지유틸리티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다수의 도서관의 참여에 의해 데이터베이스가 제작된다. 서지유틸리티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게 될 경우,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서지유틸리티만이 유일한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최근에 들어 와서 도서관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일반적으로 편집저작물에 있어서 편집자는 개별데이터를 수집, 선택 및 배열하는데 투입된 창작성 또는 노동의 원리에 입각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서지유틸리티 데이터베이스는

전통적인 편집저작물과는 상당히 다르며, 심지어 다른 일반데이터베이스와도 크게 다르다. 그래서 서지유틸리티가 유일한 저작자임을 요구할 경우, 전통적인 편집저작물에 적용하고 있는 이러한 원리를 그대로 서지유틸리티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여 그들 데이터베이스의 저작자임을 입증하기란 곤란하다.

서지유틸리티들은 그들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수고를 들이지 않는다. 서지유틸리티는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노동을 투입하기 보다는 오히려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한편 최근 미연방대법원의 데이터베이스의 독창성과 관련한 *Feist* 판결에 따르면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투입된 노력에 의하여 저작자임을 입증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서지유틸리티는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구성요소도 독자적인 판단력으로 선택하지도 않는다. 선택은 입력하기 위하여 레코드들을 선택하는 기여도서관들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오히려 서지유틸리티는 다른 사람(기관)에 의하여 선택된 데이터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수령자에 불과하다.

배열에 있어서도 서지유틸리티는 더욱 전통적인 디렉토리들이 배열되는 의미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레코드들을 배열하지도 않는다. 서지유틸리티에 있어서의 배열은 편집자의 논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효율적인 기계 성능의 기술적인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편집된 데이터에 대한 서지유틸리티 소프트웨어의 적용은 기능상 전통적인 배열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서지유틸리티는 기껏해야 매우 희석된 형태의 원저작자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

들이 저작자라는 유일한 표시는 그들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정보에 대한 검색을 허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준비한다는 점일 뿐이다. 그들은 기존의 서지네트웍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저작권 보호의 적절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서지유틸리티가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호스트컴퓨터를 준비하고,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고, 서비스들을 관리하는 것에 관여하는 기관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저작자의 정의를 확대시켜야 한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서지유틸리티는 온라인 종합목록의 편집자로서, 편집저작물을 구성하는 레코드를 수집, 선택, 배열하는데 있어서 전통적인 편집자와는 큰 차이점을 나타낸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상 서지유틸리티가 유일한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서지유틸리티 데이터베이스는 다수의 참여도서관의 기여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가 작성되므로, 서지유틸리티가 그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유일한 저작자임을 주장할 경우, 개별레코드의 저작권 소유의 주장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4.3 저작재산권

4.3.1 목록레코드의 저작권 보유의 변화

도서관 목록의 저작권 보유에 대한 주장은 목록이 기본적으로 카드상의 종이형태로 존재했을 때는 어떠한 도전도 받지 않았다. 도서관들, 특히 대규모 도서관들은 정보는 재사용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이해와 기대를 가지고, 종합목록에 있는 그들의 목록레코드들의 복제물들을 무료로 제공

하므로서 다른 도서관들이 그 정보를 사용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편집저작물로서의 전통적인 목록은 개별레코드들의 도서관 소유자가 편집된 목록의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편집저작물의 소유자와 편집저작물에 수록된 근거레코드(underlying record) 소유자 각자의 권리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한 서지유틸리티의 출현으로 인하여 종래와는 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서지유틸리티 데이터베이스들은 단일편집자에 의해 수집되고, 선택되고, 배열되는 것이 아니라, 서지유틸리티라는 매개를 통하여 상호 협동하는 수백 또는 수천 개의 참가도서관들에 의하여 수집, 선택, 배열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개별레코드의 창작자가 편집된 데이터베이스의 소유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하여 이전과 달리 저작물을 너의 것과 나의 것으로 구분하는 라인이 분명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에 입력레코드의 소유자들은 자신들의 기여에 의하여 제작된 서지유틸리티 데이터베이스가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게 될 경우, 입력레코드에 대한 각자의 권리를 확인하는 것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최근 들어 이러한 문제에 관한 논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도서관이 서지유틸리티에 제공하거나 서지유틸리티로부터 획득한 서지레코드를 소유하는가 하는 문제와 도서관이 획득한 서지레코드를 사용 또는 재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만약에 서지유틸리티에 참여하고 있는 도서관이 자신의 서지레코드에 대한 저작권의 보유를 외부의 관리에 의

하여 제한을 받게 된다면, 도서관은 그 데이터를 재사용하기 위하여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다른 도서관들과 협동적인 사업을 전개하는데 제한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도서관 협동에 의한 온라인 목록의 제작 및 이용이 활발하지 못한 실정으로 인하여 아직껏 레코드의 저작권 보유의 문제가 관심의 표명 및 논의의 대상이 된 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장차 전국적인 규모 내지 보다 확대된 규모의 온라인 종합목록서비스를 개시하게 될 경우에 발생될 지도 모르는 권리의 주장에 대비하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4.3.2 입력레코드에 대한 저작권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입력레코드에 대하여 누가 저작권을 소유하는가 하는 주장에 관한 법적 딜레마들은 실제로 미국에서 OCLC가 그들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 등록함으로써 문제가 제기되었다.

OCLC는 전자적 환경에 대처하여 일부 회원들과 제3자로부터 그들 데이터베이스의 무단복제와 무단배포를 방지하여 정보자원을 보호하고 OCLC의 경제적 생존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이용과 공정사용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1982년 12월에 그들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청에 등록함으로써, 이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으로 보호할 것임을 밝혔다. 이로서 OCLC는 다른 저작권 등록자와 같이 이제 저작권을 위반한 상업적 서비스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OCLC의 회원도서관들과 협력네트워크들은 OCLC의 저작권 등록에 대하여 크게 당황하였

을 뿐만 아니라 강한 불만을 표명하였다. 그 이유는 OCLC 데이터베이스의 수록내용은 미국의회 도서관이 작성한 LC MARC레코드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LC MARC레코드는 국가기관이 작성한 것이므로 미국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유(public domain)에 해당되므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나머지 레코드들은 회원들이 자체편목(original cataloging)해 넣은 것이므로 OCLC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OCLC는 “OCLC의 저작권 요구는 그들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저작권이 있는 개개레코드에 대한 저작권 요구가 아니라, 편집자로서 편집저작물인 데이터베이스를 편집한 방법에 대한 권리 요구에 국한된 것”이라고 수차에 걸쳐 해명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회원들은 서지레코드의 이용, 양도, 공유의 관점에서 저작권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의문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OCLC가 저작권 적용에 따른 회원들이 수용해야 할 데이터의 이용에 관하여 상당히 관대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할지라도, 도서관들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사용하기 위하여 OCLC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원들은 그들이 입력한 데이터를 소유한다고 OCLC가 승인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에 불과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결국 서지유틸리티가 참가도서관들이 자체편목하여 입력한 레코드의 권리주장에 대하여 명백한 구명없이, 단지 편집저작물의 편집자로서 저작권 보호를 요구할 경우, 이와 같이 회원도서관과 레코드의 소유 및 권리의 양도 등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서지유틸리티와 회원 및 네트워크 3자간의 전통적인 협동관계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

다.

4.3.3 공동저작자에 의한 입력레코드의 보유

우리나라에서는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 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6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이 저작물에 사용된 기존의 자료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저작물의 저작자가 기여한 자료에만 미치며, 이는 기존자료에 어떤 배타적인 권리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는 기존자료의 저작권 보호와는 별개이며, 기존자료에 존속하는 저작권 보호의 범위, 보호기간,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03조 (b))고 근거데이터에 대한 저작권과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관계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들은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에 의해서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에 많은 참가도서관의 기여에 의하여 제작된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 개별서지레코드의 저작권 보유 주장을 둘러싸고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레코드 작성의 각기여자들을 공동저작자로 간주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동저작물’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제2조 제13항)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미국 저작권법상에서는 “2인 이상의 저작자가 그들의 기여분을 단일전체와 분리할 수 없거나 상호의존적인 부분으로 통합할 의도를 가지고 작성한 저작물”(제101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만약에 많은 개별서

지레코드들이 데이터베이스로 통합될 의도를 가지고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서 각기여자들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라면, 그 기여자들은 공동저작물의 공동저작자로서 적절하게 특징지워질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소유자(joint owner)와 같이 각 공동저작자는 저작물을 사용할 권리와 제3자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권리 모두를 가진다. 따라서 공동저작자와 같은 각기여 도서관들은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될 것이며, 제3자에게 비배타적인 이용허락을 승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서지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인 개별서지레코드들은 그들이 데이터베이스에 통합된 후에도 그들의 독립된 주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공동으로 창작된 소설이나 회화의 요소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완전하게 분리될 수 없는 것이 되지는 않는다.

또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매우 많은 기여자들에 의하여 작성된 데이터베이스가 공동저작물로 보호받게 될 경우, 수백명 또는 수천명의 저작권 공동소유자가 제3자에 의한 이용을 허락하게 될 것이므로, 실제로 저작권 보호의 효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통제되는 이용허락에 의하여 야기되는 문제점들은 계약상에 서지유틸리티나 규정된 비율의 공동소유자인 기여도서관들의 사전허락없이 회원도서관들이 이용허락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대부분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작성에 참여한 각기여자들을 공동저작자로 보호할 경우 입력레코드에 대한 저작권 소유의 요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4.3.4 다운로드와 복제 및 배포

(1) 의의

다운로딩이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탐색자(최종이용자 또는 중개인을 포함)가 차후의 데이터의 재사용이나 조작 및 재포맷을 위하여 원격컴퓨터 또는 호스트시스템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퍼스날 컴퓨터나 로컬 컴퓨터의 축적장치로 기계가독형의 온라인 탐색의 결과를 빼내거나 축적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다운로드의 문제점

다운로딩을 하면 최종이용자가 탐색결과를 플로피 디스크 등에 축적하여 재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최종이용자가 검색할 때마다 매번 호스트 컴퓨터 또는 벤더를 거치지 않고도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 한번만 사용료를 지불하면 몇 번이라도 추가요금없이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서지데이터를 재가공하거나 재편집함으로써 완전한 데이터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최종이용자들이 망라적 범주의 탐색을 기대하고 있고, 부정확한 검색, 부정확한 서지정보의 제공 및 외국어로 된 자료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용을 지급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또한 도서관들은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도서관 자체내(in-house)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새로이 만들 수도 있다.

한편 원데이터베이스 제작자와 온라인 호스트는 이용자들이 정보를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화일을 만든 후 계속적으로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만을 사용할 경우, 그들 데이터의 최초 사용에만 요금을 받을 뿐이지 계속적인 사용에는 요금을 받지

못한다.

(3) 법의 대응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다운로드의 행위가 저작권에 저촉되는 침해행위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 실제로 온라인 정보이용에 있어서 다운로드 관행의 적법성에 대한 판례가 없어 불분명한 실정이다.

본래 저작권은 저작자가 만든 독창적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복제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저작자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는 것은 공정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처리나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 등의 발전은 기존의 저작권 규정이 미치지 못할만큼 크게 앞질러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운로더(downloader)가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와,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불확실하다.

미국의 CONTU (National Commission on New Technological Uses of Copyrighted Works) 보고서에서는 입·출력 문제에 대하여 저작권자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기계가독형으로 축적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무단축적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사실상 다운로드된 데이터를 도서관내에서의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기 위하여 사용하면, 수분 후에 프린트아웃될 플로피디스크상에 축적하든 간에 불문하고,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나 전체를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

행위에 해당하여, 저작자의 재산권 침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한편 검색되어 사용된 데이터가 공유(public domain)에 속하는 자료라 할지라도, 무단탐색은 마찬가지로 저작권침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정당한 비용의 지급이나 허락없이 무단도용 또는 무단복제하기 위하여 다운로드를 한 것에 대하여 저작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법적 제재조치를 변하기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운로드에 의해 획득한 데이터를 기존의 데이터와 결합하여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원데이터베이스와 경합을 벌일 경우, 배포권 및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사업자간에 심각한 법적 분쟁을 일으킬 소지도 다분하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나 벤더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도서관이나 정보서비스센터가 자체내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의 침해이며, 이용허락계약의 조건을 위반한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도서관이나 정보센터들이 자체내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기 위하여는 기관내 화일을 만들기 전에 반드시 원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부터 다운로드에 관련하여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한편 데이터베이스 이용자가 하나 이상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서지정보를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기억장치에 축적시킨 후, 그 데이터를 조작하여 새로운 저작물 또는 2차적저작물을 만든 경우, 다운로더가 얼마만큼 다운로드를 할 경우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는 공정사용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가늠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서지정보의 상당한 부분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한 경우, 그러한 다운로드의 행위는 저작물의 공정한 사용을 넘어 저작권에 저촉되는 행위가 될 것이다.

또 한편으로 이상과 같은 다운로드의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우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누가 다운로드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다운로드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다운로드한 정보가 일단 변형되면, 이용자는 이제 침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정보를 변형하여 새로운 저작물 또는 2차적 저작물이 생성된 경우 그러한 저작물들은 독립된 저작물로서 저작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때 다운로드가 원정보를 사용하여 새로운 저작물 내지 2차적 저작물을 작성했음을 부인할 경우, 변형되기 이전의 원정보는 더이상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원정보의 저작자가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원정보를 복제했는지의 여부를 가릴 수는 있겠지만, 그 증거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다운로드가 모두 불법은 아니고, 정보의 다운로드와 잇따른 재배포가 전적으로 적법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즉 디스크상의 다운로드가 계약상에 허용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4) 결어

일반적으로 미국 등 외국의 저작권 학자들과 일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들은 다운로드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장기적인 재사용과 재배포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상당부분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거나 새

로운 저작물 또는 2차적저작물을 제작하여 원저작자와 경합을 벌이기 위하여 무단으로 다운로드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로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나 벤더에게 재정적으로 손실을 가져다 준다. 따라서 정당한 경제적 보상을 저작자에게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침해행위로 간주하여 규제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4.4 저작재산권의 제한

4.4.1 다운로드와 공정사용

앞에서는 불법적인 다운로드에 의한 저작권 침해는 규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지만, 다운로드를 무조건 규제함은 저작자의 재산권 보호에 치중하는 성격이 강하게 된다. 더구나 다운로드가 정보검색의 수단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현실정을 감안한다면, 다운로드를 무조건 저작권의 침해행위로 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만약에 다운로드가 위법이라면, 많은 이용자들은 법에 저촉되고 있으며, 퍼스날 컴퓨터를 사용하는 탐색자들은 다운로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다운로딩은 기계가독형으로 축적하는 것이므로, '기술적으로 진보된 복제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운로드도 다른 유형의 복제와 같이 공정사용의 개념에 비추어서 그것의 적법성을 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미국에서 CONTU 보고서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작성된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된 후, 1980년 12월에 카터 대통령 의하여 서명된 내용을 보면, 데

이타베이스에 적용되는 공정사용은 인쇄자료에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느냐의 여부는 전통적인 저작물의 공정사용을 결정하는 다음의 판단요건, 즉 첫째 사용의 목적과 성격, 둘째 저작물의 성질, 셋째 사용한 자료의 양과 상당성(substantiality), 넷째 잠재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비상업적인 교육이나 연구를 위한 경우 또는 그 데이터가 공공적인 성격을 띠는 다운로드링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다.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공공영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것이다. 또한 다운로드링 양이 상당한 부분에 달할 경우도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될 것이다. 한편 사용이 끝난 후에는 곧 지워버리는 것을 전제로 한 다운로드링은 공정사용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다운로드링이 데이터베이스서비스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을 가늠하여 공정사용의 적용여부를 결정하기란 실제적으로 쉽지 않다.

저작물에 대한 공정사용은 전자적 정보에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므로, 우리나라 현행 저작권법상 자유로운 정보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조항 중에서, 특히 데이터베이스 서지정보서비스와 관련하여 학교교육 목적 등예의 이용(22조),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27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28조)에 관한 규정을 다운로드링에 적용하여 그 저작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예측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교육 목적 등예의 이용의 경우:

학교교육 목적 등예의 이용은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제22조). 교육적인 목적으로 온라인 탐색한 결과를 축적해 두었다가 이용자의 온라인 서지탐색의 교육용 프로그램으로만 사용할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량의 서지정보를 다운로드링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잠재적인 이용자로 하여금 차후에 온라인 정보이용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게끔 도모할 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더욱 활발히 이용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재산상의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우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탐색한 결과를 순수하게 이용자의 온라인 서지탐색의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경우에만 한한 다운로드링은 허용될 수 있다.

둘째,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의 경우: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사용할 경우 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제27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순수한 조사 연구를 위하여 개인이 가정 등 한정된 범위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다운로드링을 하는 것은 그다지 저작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다운로드링은 공정한 사용으로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는 전통적인 인쇄자료와는 달리 물리적인 형태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수록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사적 사용을 위해 한번 사용한 즉시 그 데이터를 소거함과 다

량의 서지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없다는 단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의 경우

- ①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28조 제1항)

저작권이 있는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전자적 정보의 경우에도 최종이용자가 개인적으로 조사·연구를 위하여 도서관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정보의 일부분을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다운로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겠는가? 도서관에서는 다른 저작물과 같이 최종이용자의 온라인 정보의 이용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사적인 조사·연구용으로 다운로드하고자 하는 최종이용자에 대하여 플로피디스크상의 복제를 허용할 수도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최신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도서관 이용자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의 다운로드된 전자기적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1인에게 1부의 복제를 허용한다는 조건에서 1부라는 표현은 물리적 단위로서 디스켓 1장의 복제를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1회라는 허용횟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해석상 다소 오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또한 이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서지정보를 배포하거나 기관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기계가독형태로 복제할 수 없음과 이용자가 한번 사용한 즉시 그 데이터를 소거해야 함을 단서로 해야 할 것이다.

- ② 도서관 등이 자료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제28조 제2항)

인쇄자료의 경우 회귀본이나 귀중도서 등 그 가치가 큰 자료를 자체 보존을 위하여 복제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 등이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영구적인 보존을 위하여 저작자의 허락없이 다운로드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이는 저작권 보호의 의미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 ③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28조 제3항)

이 규정은 인쇄저작물의 경우 그 유통과정상의 문제점을 고려한 적절한 배려라 하겠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는 유통상 인쇄자료의 경우와 같은 절판 등의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며,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자 할 때, 부득이하게 유통상의 특수한 사정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독하기 어렵다 하여, 저작자의 허락없이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타도서관 등으로부터 복제해서 보존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면, 이는 건전한 유통구조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재정적 손실을 가져다 줄 우려가 있다.

4.4.2 다운로드에 대한 기본지침의 설정

데이터베이스 서지정보의 남용을 막고 공정하고 원활한 정보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허용되는지 또는 무엇이 허용되지 않는지를 명시해 주는 기본지침을 이용허락계약 (license agreement) 상에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용자측에게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와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지를 알려 주어 선의의 이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측에게는 다운로드가 설정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위반할 경우 법적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운로드된 레코드를 장래의 재사용을 위해 축적할 수 있는지, 영구적인 축적을 허용할 것인지,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댓가로 요금을 청구할 것인지, 재판매를 금지할 것인지, 다른 서지데이터베이스의 레코드와 조합하여 새로운 화일을 만들 수 있게 허용할 것인지, 레코드를 변경할 수 있거나 배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이 기본방향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4.4.3 보호기간

데이터베이스들은 최신성의 유지를 커다란 특성으로 하고 있어서, 그 본질상 지속적인 데이터의 추가 보완 등의 변경이 불가피하다. 이 때 그 변경행위에 창작적인 노력이 수반될 경우 2차적 저작물로서 지속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므로, 데이터베이스 보호기간의 기산점이 계속 변화될 가능성이 있게 되고, 나아가 사실상 영구적으로 보호를 받는 결과가 된다. 이는 이용자에게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저작권법의 운영상 보호기간을 일정하게 제한한다는 기본법리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상의 보호기간을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 장기화된 지나친 보호이며,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장기적 보호는 실질적으로 큰 의미도 없다고 판단된다.

4.5 기타 관련문제

4.5.1 개변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있어서 정보나 키워드의

추가·갱신, 포맷의 변경, 복수데이터베이스의 병합등 데이터베이스를 개변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수정증감의 범위를 넘어 창작적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2차적저작에 해당하며, 데이터베이스 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의 작성권이 미친다고 판단된다. 첫째,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정보의 추가·변경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겠는가 문제이다. 둘째,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의 포맷을 이용해서 완전히 다른 정보를 축적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한 경우, 그것이 2차적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겠는가 문제이다. 셋째,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포맷에 변경을 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한 경우도 2차적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겠는가 문제이다. 넷째, 기존의 복수 데이터베이스를 병합하여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한 경우 2차적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문제이다.

4.5.2 공표시기

데이터베이스들은 대부분 온라인방식에 의하여 이용되고 있다. 온라인 방식에 의해 데이터베이스의 서비스가 시작될 경우 실제로 공중에게 제공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 데이터베이스 전체의 공표시기에 대해서 해석상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공표의 유무는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의 하나인 공표권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의 기산점 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의 공표시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온라인 서비스가 공중에게 개시된 시기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5. 서지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이용

5.1 도서관 서비스의 법적 보호

5.1.1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저작권법은 독창성을 가진 저작물 내지 데이터베이스만을 보호하는데 반해, 도서관 등에서 제작되는 일부 서지데이터베이스들은 독창성을 결여한 경우가 많다. 여기서 이러한 소재의 선택 및 배열에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도 저작권 이외의 다른 법적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 및 노력 등이 소요되는데 반하여, 제3자가 이들의 상당부분을 무단복제하여 영리를 취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규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더우기 우리나라는 서지정보를 수록한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이 선진국에 비하여 현격히 뒤떨어져 있는 현실인데, 이들을 보호해 주지 않을 경우 아무도 독창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이 문제는 순수한 학술적인 차원 뿐만 아니라 정책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이다.

5.1.2 두 가지 견해

이에 대하여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까지 보호하는 것은 경제적인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지나친 처사라는 주장도 나오기까지 하고 있다. 이 견해는 사실적 저작물의 일종인 서지정보 자체는 공유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동시에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게 되면, 일반 공중에 대한 정보의 공개와 자유로운 정보의 이용 및 나

아가 도서관들간의 전통적으로 유지해 온 협동정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원의 공유(resource sharing)를 저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러한 두 대립하는 견해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으므로, 어느 한 쪽의 견해를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전자의 관점에 따라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다 보호하자는 주장이나, 후자의 관점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일방적인 견해는 모두 옳지 않다고 본다.

5.1.3 입법태도

앞에서 살펴 본 EC의 지침초안에서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독창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를 모색하고 있다.

서지정보는 물론 수치정보 등의 국내 사실데이터베이스 뿐만 아니라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간결한 초록이나 인용문 등이 수록된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및 제작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일정한 보호를 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 보다 낮은 수준이면서 광범위한 보호를 제공하는 특별법적 권리(*sui generis right*)를 인정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서지정보를 중심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동시에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예비적인 수준에서의 시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5.2 보호의 내용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정보가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없어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의 저작권법이나 다른 특별법 속에 “불공정한 출력”을 방지하는 권리(불공정 출력방지권)를 신설한다. 이 불공정 출력방지권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상당부분을 무단복제하거나 재사용 및 다수의 복제물을 배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조사나 연구등 사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보호의 수익자는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는데 기여한 제작자로 한다. 공동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한 경우에는 공동제작자 모두를 보호의 대상자로 한다. 복제와 관련된 “비본질적 부분”의 개념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은 EC의 지침안을 참작하되, 우리의 현실적인 실정을 신중히 고려한 후에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공표하도록 설립되거나 공공의 의무하에서 설립된 공공기관에 의해 널리 이용되도록 제작된 데이터베이스는 공유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일반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허락이 없이도 그 데이터베이스를 출력 및 재사용할 수 있게 불공정 출력방지권의 적용을 배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불공정 출력권의 보호기간은 10년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10년의 보호기간은 그리 짧지 아니하며, 동시에 이용자의 정보이용에도 커다란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UNESCO와 WIPO에 의해 제시된 데이터베이스 관련원칙에서도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10년 이상으로 하였으며, EC 지침안에서도 10년의 보호기간을 제외한 바를 근거로 한 것이다.

6. 서지데이터베이스의 다운로드에 대한 관행 및 법적문제에 관한 의견조사 및 분석

6.1 조사목적

본 설문조사의 조사목적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서지정보의 다운로드에 대한 관행실태 및 법적 문제의식을 파악하여, 정보이용자의 공정하고 자유스러운 정보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대책을 강구하는데 참고하고자 하는데 있다.

6.2 조사대상

설문의 조사대상자로는 크게 두 부류로서, 데이터베이스 이용자(사서포함)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구분하였다.

6.3 자료수집 및 기간

데이터베이스 제작기관의 선정은 그에 관하여 명확하게 발표된 도서관자료가 없고, 데이터베이스의 최종이용자에 관한 정보도 획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정보는 KINITI와 DACOM으로부터 입수하였으며, 연구단지정보관리총람 1992(연구단지정보관리협의회 기술위원회 편)도 참조하였다. 아울러 최종이용자에 대한 정보는 직접 KINITI에서 조사한 것도 포함시켰다.

설문지의 배포는 일차적으로는 우편으로 1992년 3월 15일에 배포하였으며, 이차적으로는 우편과 인편을 통하여 배포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1992년 4월 30일까지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총 400부를 배포하여 274부(68.2%)가 회수되었으나, 그 중 통계자료로 처리하기에 전혀 불가능한 19부를

제외한 255부 (약 63%)에 대해서만 문답내용을 분석하였다. 한편 본 설문조사 중 다운로드에 관련된 6에서 19까지의 문항에 대한 분석은 255부 중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7부를 제외한 248부 (약 62%)에 대해서만 문답내용을 분석하였으며, 14-15 문항에 대한 조사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대한 설문문항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응답된 47부에 대해서만 문답내용을 분석하였다.

6.4 자료의 분석방법

자료에 대한 분석은 SPSS+ package을 사용하여 본 설문문항에 대한 단순빈도와 응답자에 대한 인구학적 속성에 있어서의 각 변인과 각 설문문항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6.5 분석결과

(1) 서지정보의 법적보호에 대한 관심도

서지정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응답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68.6%), 응답자의 1/3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31.4%).

(2) 서지정보 법적보호의 필요 유무에 대한 견해
서지정보를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았다 (83.5%).

(3) 서지정보의 법적보호 필요성의 이유에 대한 견해

서지정보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장 큰 이유로는, 서지정보 사용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각종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가

장 많았고 (45.5%), 그 다음으로 국내 데이터베이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팽팽하였다 (41.8%).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국제적인 보호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가장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10.8%).

(4) 서지정보의 무단사용 및 무단복제에 관한 견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서지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복제하는 것에 대하여는, 영리 등의 의도적인 목적으로 행하지 않는 한 불법적인 행위는 아니다라는 견해가 가장 많았고 (52.2%), 그 다음으로는 어쨌든 무단사용 및 무단복제는 건전한 정보유통질서를 해치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여기는 견해가 많았다 (46.7%). 반면에 전혀 불법적인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견해는 0.8%에 불과하였다.

(5) 서지데이터베이스의 제작과 인쇄물의 작성에 투입되는 비용과 노력의 차이에 대한 견해

서지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는 데에는 인쇄물을 작성하는 것보다 비용과 노력이 더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3.1%),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36.5%)의 약 2배에 달하였다.

(6) 서지정보 다운로드 경험의 유무

서지정보를 소급탐색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다운로드를 하는가에 대하여는, 다운로드를 한 경험이 있다는 사람들이 (75.4%) 다운로드를 한 경험이 없다고 한 사람들 (23.0%) 보다 매우 많았다.

(7) 서지정보 다운로드시 개인적 용도로 다운로드하는가에 관한 여부

개인적 용도 (사적 조사나 연구)로 레코드를 재사용 또는 편집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서지정보를 다운로드하는가에 대하여는, 약간 더

많은 응답자들이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서지정보를 다운로드한다고 응답하였는데 (50.0%), 연령별로는 젊은 층으로 갈수록 높은 다운로드의 관행을 나타냈다.

(8) 개인적 용도로 서지정보를 다운로드할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허락이 필요한가에 대한 견해

개인적 용도로 서지정보를 다운로드할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훨씬 우세하였다 (74.2%).

(9)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외의 서지정보 다운로드의 유형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 서지정보를 다운로드하는 유형에 대하여는, 내부탐색이나 재사용을 하기 위하여 단기간 또는 장기간 축적을 목적으로 다운로드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73.8%), 기관내 배포를 위한 다수의 복제를 위하여 다운로드를 하는 경우 (28.6%), 복제물의 재판매를 위하여 다운로드를 하는 경우 (2.4%)의 순서로 나타났다.

(10) 내부탐색을 위하여 장기간 축적을 하거나 다수의 복제물의 기관내 배포를 위하여 서지정보를 다운로드할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허락이 필요한가에 대한 견해

내부탐색을 위하여 장기간 축적을 하거나 다수의 복제물의 기관내 배포를 위하여 서지정보를 다운로드할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하여는,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조금 더 우세하였다 (51.2%). 그러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견해 (36.7%)는 개인적 용도로 다운로드를 하는 경우보다는 강하게 나타났다.

(11) 서지정보의 다운로드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수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견해

서지정보의 다운로드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수입을 감소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조금 더 강하였으나 (56.0%),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수입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견해도 팽팽하였다 (42.3%).

(12) 서지정보 다운로드의 지침에 관한 인지도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서지정보의 다운로드에 관한 공식적 규제지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이 사실을 모른다는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85.9%).

(13) 서지정보 다운로드 규제지침의 준수에 관한 의식

서지정보의 다운로드에 관한 규제지침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식이 월등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82.3%).

(14) 제작자측의 서지정보 다운로드 지침의 유무

데이터베이스 제작기관이 서지정보의 다운로드에 관한 지침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제작기관이 다운로드에 관한 공식적 규제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89.4%), 나머지는 무응답을 하였다.

(15) 제작자측의 서지정보 다운로드 지침의 수립 계획 여부에 관한 견해

데이터베이스 제작기관이 서지정보의 다운로드에 관한 공식적 규제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앞으로 다운로드를 규제하는 지침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서지정보의 다운로드 규제지침을 수립하겠다는 제작기관은 극히

적었다 (10.6%).

(16) 서지정보에 대한 다운로드 규제지침상 개인적 용도의 다운로드와 장기적인 재사용 또는 다수의 복제물의 배포를 위한 용도의 다운로드 간의 구분에 관한 견해

서지정보의 다운로드에 관한 규제지침에 있어서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다운로드와 장기적인 사용 또는 다수의 복제물의 배포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다운로딩은 구분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이를 구분해야 한다는 견해가 훨씬 더 우세하였다 (72.6%).

(17) 서지정보 다운로드 규제의 찬반에 대한 견해

서지정보의 다운로드를 허용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규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다운로딩은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을 촉진하므로 막아선 안된다는 견해가 월등히 많았다 (79.4%).

(18) 서지정보 다운로드 규제지침의 구속력에 대한 견해

서지정보의 다운로드에 대한 규제지침이 불법적인 다운로드의 관행을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불법적인 다운로드의 관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견해는 저조하게 나타났다 (33.1%).

(19) 일정한 조건하에서 서지정보 다운로드 허용 여부에 대한 견해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서지정보를 다운로드하는 것을 무조건 금지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하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하여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다운로드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등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다운로드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다 (96.0%). 따라서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조건에 한해서 데이터베이스내 서지정보의

다운로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론

1. 저작권법상 보호

서지유틸리티를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현행 저작권법의 적용여부를 분석한 결과 불합리하고 미흡한 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우리나라에서 서지정보를 보호하고 원활한 정보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은 앞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이들 내용을 반영하는 길이다. 우리나라에서 데이터베이스가 법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저작권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1) 저작물로서의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또는 예시

① 저작물의 종류로 데이터베이스를 조문상에 명확히 예시한다.

② 비전자적 형태의 편집저작물과 데이터베이스를 명확히 구분한다.

③ 데이터베이스를 문자, 수자, 정보 등이 체계적으로 구성된 '전자적 정보의 집합물'로 정의한다.

④ 비전자적 정보의 집합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편집저작물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이나 운용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2) 데이터베이스의 저작물성 판단기준의 보완

① 현행 저작권법상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의 창

작성에 의해서만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것은 불충분하므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 ② 데이터베이스의 특성 및 작성과정에 수반되는 지적활동에 있어서의 창작성이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성의 판단기준에 반영되도록 한다. 즉 전자적 데이터의 체계적 구성, 분석, 가공 및 키워드의 선정 부여 또는 화일의 작성 등에 지적 판단력이 행사된 경우에는 그 창작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 ③ 저작자 자신의 지적 창작인 경우에 한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한다.
- (3) 서지유틸리티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개별서지레코드의 저작물성의 인정
- ① 개별목록레코드는 교육과 경험을 통하여 획득한 전문기술 및 지식을 갖춘 편목자의 지적 판단에 의해 작성되므로 저작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②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저작물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최소단위에도 보호의 범위가 미치도록 해야 한다.
- (4) 다수의 입력자에 의하여 레코드가 작성되고 네트워크를 통해 그 정보가 공유되는 경우
- ① 서지유틸리티를 전통적인 편목자와 동일한 저작자로서 인정해서는 안된다.
 - ② 서지유틸리티만을 유일한 저작자로서 인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저작자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
 - ③ 저작물성을 가지고 있는 레코드를 입력하는 기관에 대하여 그 편집권을 인정해야 한다.
 - ④ 데이터베이스가 전형적인 공동저작물이 아닐지라도, 입력레코드의 작성에 기여한 각 도서

관을 공동저작자로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5) 다운로드에 있어서 정보의 공정사용의 도모
- ① 저작권법에서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규정”인 경우 이용자의 온라인탐색이 교육적 목적인 경우에만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도록 한다.
 - ②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 규정”은 이용자가 한번 사용한 즉시 소거하거나 상당부분을 복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한다.
 - ③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중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저작물의 1인 1부에 한하여 허용되는 복제 규정”은 다량의 정보를 배포하거나 기관내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되며, 한번 사용한 즉시 소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④ “도서관 등이 회귀본이나 귀중도서의 자체보존을 위해 허용되는 복제규정”은 back up 화일의 작성 등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보존용으로 타도서관으로부터 복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 ⑤ “절판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을 보존용으로 복제하는 것이 허용되는 규정”의 경우도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복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 ⑥ 제3자에 대한 무단복제 및 무단사용은 저작권자의 재산권 침해행위로 규정한다.
- (6)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보호기간
- ① 데이터베이스를 일반 저작물과 동일하게 장기간 보호할 것이 아니라, 보호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데이터베이스 보호기간에 대한 단축조정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와 이용자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 이들의 이익을 균등하게 보호하는 기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 ③ 입력레코드의 소유자가 각각 재산권을 행사할 경우, 각 레코드의 기산점을 계산하여 권리 보호를 수시로 집행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우므로 기산점에 대한 계산관리는 중앙에서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 ④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비본질적 변경은 원데이터베이스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지 않도록 한다.

(7) 데이터베이스 공표시기

데이터베이스의 일부 정보는 공표되었다 할지라도, 전체에 대한 공표시기에 대하여 생기는 해석상의 오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공중에게 서비스가 개시된 시기로 한다.

2. 불공정출력방지권

창작성의 결여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불공정출력방지권의 제도를 도입한다.

- ① 불공정출력방지권은 데이터베이스가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서 창작성의 결여로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② 법적 보호대상은 개별 저작자가 아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되어야 한다.
- ③ 창작성이 결여된 데이터베이스의 소재도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출력하거나 재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 ④ 데이터베이스가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의해 제작된 경우에는 불공정출력방지권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 ⑤ 보호기간은 데이터베이스가 합법적으로 공중

에게 서비스를 개시한 날로부터 10년으로 한다.

이상에서 제시된 방안이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의 경우 서지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이 어떻게 어디까지 적용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무단복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일반국민에게 주지·인식시키기 위한 홍보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2) 데이터베이스 서지정보의 남용을 막고 공정하고 원활한 정보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용허락계약 상에 다운로드에 관한 명시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3)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한 전자출판, 멀티미디어, 자동색인 및 자동초록 등의 급격한 출현은 이들 매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더욱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金文煥. 1990. "데이터베이스의 法律問題". 저작권 11 : 4-13.

安孝秩. 1989. 著作權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의 保護. 고대 법학석사학위논문.

양영준. 1990. "국내법 제도하에서의 DB보호 및 판례". 데이터베이스보호에 관한 공개토론회 : 27-73.

李淳子. 1988. "저작권보호와 도서관에서의 저작

- 물 공정사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
원 도서관학 박사학위논문.
- _____. 1990. “정보관리와 關聯된 法的問題”. 圖
書館學 제19집 : 23-61.
- _____. 1984. “컴퓨터와 연관된 知的所有權保護
策의 現況과 問題點”. 情報管理學會誌
1(1) : 9-24.
- 정용철. 1990. “데이터베이스 보호제도와 기타 지
적재산권법과의 비교”. 데이터베이스 보
호에 관한 공개토론회, 특허청 : 75-127.
- 鄭陳燮. 1991. 國際知的所有權制度的 現況 및 發
展方向.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
논문.
- 최경수. 1989.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보고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通信開發研究院. 1989. 데이터베이스 (DB) 의
法的보호문제 (‘정보화사회와 지적소유
권’ 시리즈 Ⅱ). 서울 : 通信開發研究院.
- 韓勝憲. 1990.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국제적 동향”.
著作權 11 : 14-21.
- 洪在炫. 1992. “書誌데이터베이스의 著作權 保護
動向에 관한 研究”. 도서관 47(1) : 25-
42.
- 吉田靖. 1986. “デーグベ-スと情報の著作權-著作
權審議會第7小委員會報告の概要”. 情報
管理 : 20-29.
- 名和小太郎. 1990. “デーグベ-スの著作權”. 情報の
科學と技術 4(6) : 411-415.
- 松田政行. 1988. コンピュータ時代の知的所有權.
東京 : ぎょうせい.
- 中本秀四郎. 1985. “다운로-딩과 著作權問
題”. ドクメンテーション研究 35(9) :
487-493.
- 播磨良承. 情報社會における知的所有權 II. 東京 :
ぎょうせい. 平成2年.
- Beck, Henry. 1991. “Copyright Protection for
Compilations and Databases After
Feist”. The Computer Lawyer 8(7) : 1-
9.
- Brown, Richard L. 1985. “Copyright and
Computer Databases : The Case of the
Bibliographic Utility”. Rutgers
Computers & Technology 11 : 17-49.
- Brown, Rowland C. W. et al. 1985. “The
Ownership of Bibliographic Data -
OCLC’s Experience: A Symposium”.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11(4)
: 196-205.
- Cargill, Jennifer and Graves, Diane J. 1990.
Advances in Library Resource Sharing.
Westport CT : Meckler.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988.
Green Paper on Copyright and the
Challenge of Technology - Copyright
Issues Requiring Immediate Action,
COM (88) 172 final, Brussels, 7 June
1988.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992.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COM (92) 24 final-SYN 393, Brussels,
13 May 1992.
- CONTU’S Final Report and Recommendations
(Copyright, Congress and Technology
: The Public Record Volume 5), 1980.
ORYX Press.

- Duchesne, Roddy. 1986. Copyright, Ownership of. in Machine-Readable Bibliographic Data.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 40, Supplement 5. Dekker : 33-43.
- Duggan, Mary Kay. 1991. "Copyright of Electronic Information : Issues and Question". Online 15(3) : 20-26.
- Garman, Nancy. 1986. "Downloading ... Still a Live Issue ? : A Survey of Database Producer Policies for Both Online Services and Laserdisks". Online 10 (July) : 15-25.
- Gray, Rosemary. 1985. "Databases, downloading and proprietary rights". Program 19(4) : 311- 321.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n Age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1986. Washington :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report).
- Jansen, A. 1984. "Problems and Challenges of Downloading for Database Producers". The Electronic Library 2(1) : 41-49.
- Keplinger, Michael S. 1980. "Copyright and Information Technology".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15 : 3-33.
- Library of Congress. 1979. Final Report : of the National Commission on New Technological Uses of Copyrighted Works. Washington : Library of Congress.
- Lowry, C. B. 1987. "Ownership of Bibliographic Data and Its Importance to Consortia".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8(3/4) : 69-84.
- Millard, Christopher. 1992. "Comments on the Proposed EC Database Directiv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6(3) : 76-77.
- Miller, Arthur R. and Davis, Michael H. 1990. Intellectual Property :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 2nd ed., St. Paul, Minn. : West Publishing Co.
- Miller, Jerome K. 1983. "Copyright Protection for Bibliographic, Numeric, Factual, and Textual Databases". Library Trends 32(2) : 199-209.
- Moor, Celia Delano. 1983. "Ownership of Access Information : Exploring the Application of Copyright Law to Library Catalog Records". Computer/Law Journal 4(2) : 305-372.
- Nasri, William Z. 1986. "Copyright: A Lasting Question for Managers".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7(4) : 83-98.
- Pattison, Michael. 1992. "The European Commission's Proposal of the Protection of Computer Databases".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14(4) : 113-120.
- Talab, Rosemary S. 1985. "Copyright and Database Downloading". Library Journal 110 : 144-147.
- Taylor, Betty W. 1984. "OCLC / Networks /

Library and the Copyright / Contract Debate". Technicalities 4(4) : 15-16.

Warrick, Thomas S. 1984. "Large Databases, Small Computers and Fast Modems... An Attorney Looks at the Legal Ramifications of Downloading". Online (July) : 58-70.

Wolfe, M. 1982. "Copyright and Machine Readable Databases". Online (July) : 52-55.